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916
----------	-------

발의연월일 : 2025. 9. 11.

발 의 자 : 한민수 · 조계원 · 이연희
박상혁 · 이해식 · 이정문
박균택 · 박해철 · 송옥주
김영호 · 한병도 · 권칠승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침해사고의 발생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음에도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늦게 공지하여 피해 확산에 대한 이용자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침해사고의 신고 시기와 관련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신고 지연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의 예방과 침해사고에 대

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제1항 및 제4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3제1항 전단 중 “즉시 그 사실”을 “그 침해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침해사고의 발생 일시 및 대응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고의 시기, 방법”을 “신고의 방법”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u>즉시 그 사실을</u>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미 다른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 통지 또는 신고를 했으면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u>신고의 시기, 방법</u>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① ----- ----- <u>그 침해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u> <u>부터 24시간 이내에 침해사고의 발생 일시 및 대응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u>신고의 방법</u> ----- ----- ----- -----.